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22. 11. .

2. 발의자: 김기열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지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용자, 대여 사업자, 도로 정의 신설(안 제2조)
- 교육·홍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
-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무단방지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5. 참고사항(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 제27조, 제32조, 제34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검토의견

- 해당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시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을 위해 이용자, 대여 사업자, 도로의 정의 신설과,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교육·홍보 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한 조례안으로서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 여부,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력 부담 여부 및 법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 일부 조문 개정에 따라 삭제 된 약칭의 규정(안 제2조제1호)이 필요하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할 필요성이 있으며(안제6조제1항),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대부분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 장소도 공원,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며, 이용 후 무질서하게 주차(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시설 설치(안제7조)와 무단방치 금지 등(안제8조)의 조문 신설은 필요하며,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등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안 제9조)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함.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형 이동장치”란 <u>「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u></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u> ----- -----.</p> <p>2. ~ 4. (조례안과 같음)</p>	<p>조례 나머지 부분에 약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약칭 규정 필요</p>
<p>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 <u>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p> <p>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p> <p>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 운영</p> <p>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p> <p>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p> <p>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 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p> <p>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삭제></p>	<p>「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해당규정 부적절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1-0319)</p>